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5. 11. 18.
- 다. 상정일자: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가. 제안이유

마포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
 - 재단소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 신용보증사업·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등 추진
- 2) 출연금액: 10억 원
 - '2026년 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지원
- 3)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기금의 조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

4) 사업내용: 특별신용보증사업 추진

-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출연 필요성

- 내수 위축, 경기 둔화 및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 증대

6) 추진일정

- (2025. 11.) 구의회 의결 요청
- (2025. 11.~12.)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확정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절차적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시중은행의 저금리 운영자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원 수단임. 최근 내수 부진, 금리부담,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신용보증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출연금은 재단의 특별보증 한도 확충 및 대위변제 충당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보증여력을 뒷받침함.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마포구는 2005년 이후 총 9회에 걸쳐 5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 16억 원을 출연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왔음.
 -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및 매출 부진 등이 지속되는 여건을 고려하면,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출연은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함.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21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2	2	2	2	2	16	10	10	10	56

- 종합적으로, 본 출연계획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되나, 2026년도 특별보증의 지원대상, 우대보증 조건, 예상 수요·보증소진 전망, 보증 실적·부도율·대위변제 규모 등 구체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